

# 광역시-군·구 이양사무 발굴에 관한 연구\*

：인천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How to Transfer Works from Metropolitan City to Local Governments

：A Case of Incheon Metropolitan City

박재희\*\*

Park, Jaehhee

## ■ 목 차 ■

- I. 서론
- II. 광역시-군·구 사무배분 기준 및 원칙에 관한 이론적 논의
- III. 인천광역시-군·구 이양사무 발굴 과정에 대한 연구 설계
- IV. 분석결과 논의
- V. 이양사무 발굴을 위한 정책 시사점

본 연구의 목적은 광역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는 사무 가운데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를 도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치분권 업무 추진에 필요한 정책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사무배분의 원칙, 기준, 판별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광역시 본청과 군·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 및 면접 조사를 통해 이양 요청 사무들의 필요성, 기대효과, 조건 및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또한 이양이 요청된 사무들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가 의견 조사를 통해 광역-기초 판별 기준들을 다각도로 검토하였다. 이 양의 타당성이 확보된 사무들은 현지성과 대응성이 높아 이양시 주민의 편의성이 높은 사무들인 반면에 이양의 타당성이 부족한 사무들은 군·구간 업무량 편중이 심하고 전문성을 필요로 하여 광역단위의 통합적 관리가 더 효과적인 경우이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 사무배분 및 이양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사항을 제시하였다.

\* 이 논문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시도 정책과제인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광역시-군·구 사무이양에 관한 연구’ 중 일부를 토대로 작성한 글입니다.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논문 접수일: 2020. 08. 10, 심사기간: 2020. 08. 10 ~ 2020. 09. 14, 게재확정일: 2020. 09. 14

주제어: 사무배분, 사무이양, 자치분권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works that are desirable to transfer to local governments from Metropolitan City. First, the paper discusses the principle, standards and identification process for work distribution between the metropolitan city and local governments. Through surveys and interviews of the government officials and experts, then, the paper reviews various aspects of work distribution such as effectiveness, efficiency, and responsiveness to determine the works that are desirable to transfer to the local governments. Based on the results, we provide policy recommendation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work distribution between the higher and lower level governments.

Keywords: Work Distribution, Devolution,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 I. 서론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시행계획의 주요한 내용은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국가-자치사무의 구분기준을 명확히 하고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광역-기초)간 사무배분의 일관성 및 합리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광역-기초단체 간 사무배분의 합리화는 광역 기능 중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능은 기초로, 기초가 수행하기 어려운 광역·종합 기능은 광역으로 재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구 과소화 등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처리하기 곤란한 사무는 광역자치단체로 이관 또는 위탁처리하거나, 특별자치단체 등 자치단체 간 협력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연구된 바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사무중복이 심각하고, 광역 자치단체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으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사무구분체계가 모호하고, 실제 개별 사무가 어디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서 정부 간 갈등이 적지 않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사무배분의 일반 원칙, 기준 및 판별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광역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는 사무 가운데 기초자치 단체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를 발굴하여 제시하는 것은 지방분권 추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광역시 본청에서 군·구로 이양이 가능한 분야와 사무를 도출함으로써 자치분권 업무 추진에 필요한 시의적절한 정책 자료를 제공하고 인천광역시의 분권 전략 개발 및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써 광역-기초 간 합리적 사무배분 체계를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광역시 권한 사무의 군·구 이양은 중앙 정부에 대한 자치분권 요구에도 부합하며 광역시, 군·구간 협치를 통해 정책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대민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연구 과정을 진행하였다. 첫째, 문헌조사를 통해 광역시-군·구 사무배분 기준 및 원칙에 관한 이론적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둘째, 이양사무 발굴 과정의 일환으로 공무원 의견조사 및 면담조사 등을 통해 이양의 필요성, 조건, 기대효과 및 문제점을 면밀히 조사하였다. 셋째,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마지막으로 발굴된 이양사무들을 검토하고 광역시-군·구 간 합리적 사무배분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사항을 제안하였다.

## II. 광역시-군·구 사무배분 기준 및 원칙에 관한 이론적 논의

### 1. 사무배분의 기준

사무배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들 간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적 행위를 의미한다. 기능의 이관대상(권한, 기능, 사무)과 이관방식(이양, 배분)에 따라 사무배분, 사무이양, 기능이양 등 용어가 혼용되기도 하는데, 광의의 사무배분은 권한배분, 권한이양, 사무이양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박재희, 2019). 본 연구에서 이 양은 광역시에서 자치구·군으로 특정 기능에 대한 전체 권한의 법적 변경을 초래하는 일련의 법률적 행위를 의미하며, 사무와 권한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배분과 이양을 통합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사무 배분의 기준에 대한 검토에 앞서서 분석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분석 기준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에는 사전 타당성 분석이 있다. 사전 타당성 분석의 평가 기준으로는 크게 기술적 분석, 경제적 분석, 정책적 분석 등이 논의되고 있다(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6). 기술적 분석은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사업계획의 완성도,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기술적 성공가능성으로 이루어지며 경제적 분석은 경제성(비용편익분석), 산업파급효과, 고용효과로 구성된다. 정책적 분석은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국가 전략의 중요성, 사업추진의지와 관련기관 협조체계,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으로 구성된다.

실제적 문제해결 과정에 대응하면서 발전해온 정책 분석은 근본적으로 정치적 과정 안에 포함된 지적인 활동이다(윤정옥 외 2018). 정책분석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기준은 효과성, 능률성, 충족성, 형평성, 대응성, 적합성 등을 포함한다(Dunn, 2018). 효과성(effectiveness)은 가치 있는 결과의 달성을 정도로써 목표달성을 여부를 의미한다. 능률성은 노력과 효과성의 관계로 주어진 수준의 효과 산출에 필요한 노력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이다. 충족성(adequacy)은 주어진 기준의 효과성 또는 능률성을 달성을하는 것을 의미한다. 형평성(equity)은 여러 집단 사이에 특정한 정책의 비용과 편익의 배분을 의미한다. 대응성(responsiveness)은 정책의 성과가 특정한 집단의 욕구나 선호, 또는 관심을 충족시켜주는 정도이며 적합성(appropriateness)은 정책 목표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가치를 포함하고 있는가에 대한 기준이다

〈표 1〉 분석 기준

사전 타당성 분석	정책 분석
기술적 분석: 중복성, 완성도, 파급효과, 성공가능성	효과성: 목표의 달성을 정도
	능률성: 효과 산출에 필요한 노력의 양
경제적 분석: 경제성, 산업파급효과, 고용효과	충족성: 주어진 기준의 효과성/능률성 달성을
	형평성: 집단들 간 비용과 편익의 배분
정책적 분석: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국가전략의 중요성, 사업추진의지, 관련기관과의 협조체계, 사업추진상 위험요인/ 대응방안	대응성: 정책집단의 욕구 충족 정도
	적합성: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정도

정책을 분석하기 위해서 분석기준이 있어야 하듯이 광역시와 군·구간 사무를 배분하기 위해서 배분기준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0조 제1항은 광역사무와 기초사무를 분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1호는 불경합성의 원칙을 구체화한 것으로 시·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 시·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국가와 시·군 및 자치구 사이의 연락·조정 등의 사무, 시·군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 부적당한 사무,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0조 제1항 제2호는 시·군 및 자치구가 처리하는 사무로 시·도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시·군 및 자치구가 처리하는 사무는 전권한성의 원칙에 따라 주민의 복리에 관한 모든 사무 중 동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시·도가 처리하지 않는 사무이다.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sup>1)</sup>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상 현행 기준에 더하여 보완·재배분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광역 사무 기준으로 시·도 관할의 시·군·구간 조정, 평가 등에 관한 사무,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광역적 규모 하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 시·군·구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 사무 처리의 효과가 시·도에 한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무, 행정수요 특성에 의해 시·군·구별 업무량이 편중된 사무로 제시하고 있다. 기초 사무 기준으로 국가 또는 시·도 차원의 통일적 처리를 요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지역 특성에 맞게 업

1)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사무배분의 기준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최봉석 외(2015)를 참조 바랍니다.

무처리가 필요한 사무, 현지성이 강하여 시·군·구가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 사무 처리의 효과가 시·군·구에 한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무, 전문지식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집행적인 성격의 사무로 제시하고 있다

〈표 2〉 광역 사무 기준

현행 기준(지방자치법)	자치분권위원회 보완 재배분 기준
-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	- 시·도 관할의 시·군·구간 조정, 평가 등에 관한 사무
- 시·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광역적 규모 하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
-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 시·군·구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
- 국가와 시·군 및 자치구 사이의 연락·조정 등의 사무	- 사무 처리의 효과가 시·도에 한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무
- 시·군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 부적당한 사무	- 행정수요 특성에 의해 시·군·구별 업무량이 편중된 사무
-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무	

〈표 3〉 기초 사무 기준

현행 기준(지방자치법)	자치분권위원회 보완 재배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li> <li>※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경우 도의 시무 중 일부 직접 처리(지방공사 설립·운영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또는 시·도 차원의 통일적 처리를 요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지역특성에 맞게 업무처리가 필요한 사무</li> <li>- 현지성이 강하여 시·군·구가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li> <li>- 사무 처리의 효과가 시·군·구에 한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무</li> <li>- 전문지식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집행적인 성격의 사무</li> </ul>

## 2. 사무배분의 원칙

지방자치법 제10조 제3항은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서로 경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무가 서로 경합하면 시·군 및 자치구에서 먼저 처리한다”라고 하여 사무배분 시에 불경합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

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방분권법) 제9조 제1항은 “국가는 기방자치단체가 행정을 종합적·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기방자치단체 간 또는 기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사무를 주민의 편익증진, 집행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배분하여야 한다”고 불경합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분권법 제9조 제2항은 불경합성의 원칙에 따라 사무를 배분하는 경우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시·군 및 자치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의 사무로,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방분권법 제9조 제3항은 “국가가 기방자치단체에 사무를 배분하거나 기방자치단체가 사무를 다른 기방자치단체에 재배분하는 때에는 사무를 배분 또는 재배분 받는 기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자기의 책임 하에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를 포괄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고 포괄적 사무배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분권법 제9조 제4항은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국가 또는 기방자치단체의 관여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민간의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고 민간참여 확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 3. 선행연구 검토

국가와 기방자치단체 간 사무배분이 역대 정부에서 주요 정책과제로 다루어졌고, 학계에서도 중앙-지방 간 사무배분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사무배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실정이다.

대상 측면에서 중앙-지방과 광역(지방)-기초(지방)가 다르지만, 사무배분의 원칙과 기준 측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국가와 기방자치단체 간 사무배분 연구를 중심으로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다. 그 동안 사무배분 연구는 국가와 기방자치단체 간 수행기능의 유사성 및 중복성에 따른 비효율성 등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사무배분의 원칙 및 기준 등을 제시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김영수, 1995; 손진상·김창승, 2002; 이세진 외, 2012; 정경배 외 1993; 최항순, 2010). 구체적으로 제시된 기준들은 비용의 효과성(규모의 경제와 현지 비용 절감), 업무의 난이도(전문성과 단순성), 거리기준(원격성과 근접성) 등이다. 이러한 기준들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주민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중앙정부의 관점에서는 책임성, 능률성, 비용의 효과성 등이며, 지방정부의 관점에서는 인력 및 재정능력 확보 등이며, 주민의 관점에서는 접근 용이성 등이다.

다음으로 특정 분야나 기능 또는 사무를 대상으로 지방분권이나 권한이양의 관점에서 중앙과 지방간 사무 배분 구조를 분석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김필두·한부영, 2017, 박재희,

2019·박종관, 1996; 박혜자·오재일, 2003). 사례로 분석된 분야 및 기능은 교육, 노동, 농정, 문화, 복지, 식품안전, 체육, 환경 등이며, 현지성, 대응성, 전문성, 편의성, 연계성, 효율성 등을 사무배분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배분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금창호, 2018; 김병국, 2003; 이원일, 1998; 최봉석, 2015; 최항순, 2010). 구체적으로 이원일(1998)은 부산광역시를 사례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갈등을 발생시키는 원인 및 사례분석을 토대로 양자 간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기능배분의 불균등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병국(2003)은 도와 관할 기초자치단체간 기능배분에 있어서 획일적이고 불명확한 기준, 경합배분, 과다한 관여 사무 등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최항순(2010)은 시·도와 시·군·구 간 사회복지 기능 배분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종합성, 비경합성, 능력적합성, 현지성 등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금창호(2018)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기능 배분에 대한 구조와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체감도 및 수용성 저하, 대응성 부재 등의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기능유형별 배분체계로의 전환 필요성과 이를 위한 일괄이양법 도입을 제안하였다.

사무 배분 기준 및 원칙과 관련하여 이원일(1998)은 사무 재조정 원칙으로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을 제시하고 광역자치단체는 인·허가 등 집행기능을 축소하고 조정·기획 기능을 강화하며, 기초자치단체가 처리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사무와 기초자치단체 간 격차 해소가 필요한 사무 등을 수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김병국(2003)은 기능 재조정의 원칙으로 보충성의 원칙, 행정책임 명확화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 차등 이양의 원칙, 능률성의 원칙, 행·재정 지원 병행의 원칙 등을 제시하였다. 기능 재조정의 기준으로는 영향의 범위, 사무수행의 용이성, 사무 중복성, 사무 수행능력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 간 기능 재조정의 기준으로는 현지성, 업무 연계성, 전문성, 효율성, 통일성을, 도 기능 재조정 기준으로는 주민 편의성, 주민 접근 용이성, 효율성, 지역 특성 개발 및 지역산업 육성을 제시하였다. 최항순(2010)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기능의 합리적 배분은 시·군·구가 현실적인 복지 수요에 기반한 구체적인 자체 계획을 세우고 시·도가 사무배분 및 재정분담에 있어서 협의 및 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최봉석(2015)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사무 배분 기준의 문제점으로 시·군의 사무를 도가 처리하지 않는 사항이라고 명시하거나 광역사무의 기준으로 연락조정사무, 지도감독사무만을 제시하는 등 실제 사무배분에 있어서의 낮은 유용성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는 특정 분야나 기능을 대상으로 이양 사무에 대하여 규범적 접근을 한 것이 아니라 인천광역시 공무원들로부터 이양이 요청된 사무들을 대상으로 판별기준에 입각한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하여 이양 타당성을 점검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차별성을 갖는다.

### III. 인천광역시-군·구 이양사무 발굴 과정에 대한 연구 설계

#### 1. 조사 설계

인천광역시 이양사무 발굴조사는 크게 공무원 설문 및 면접 조사와 전문가 의견조사로 진행되었다. 인천광역시 전체 사무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인천광역시 조례뿐만 아니라 그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법, 시행령 등)들로부터 이양사무를 발굴하여야 하나, 이 경우 상위 법령 및 인천광역시 조례를 전수 조사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상위 법령 및 인천시 조례 전체를 조사 내용으로 하는 경우, 이양 사무 발굴 조사 대상의 범위와 방법들이 모호해질 수 있다. 차선책 및 대안으로 인천광역시 본청 공무원과 자치구 및 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무들에 대한 이양 여부와 그 근거를 묻는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병행하여 이양사무를 발굴하였다. 인천광역시에서 이양하고 싶은 사무에는 무엇이 있는지, 반대로 군·구에서 이양 받을 필요가 있는 사무에는 무엇이 있는지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면담조사를 통해 이양 동의/비동의 여부 및 이유를 정리하였다.

공무원들이 이양의 필요성을 제시할 때 고려하는 기준들은 다음과 같다. 현지성이 강해 구나 군이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사무, 주민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사무, 광역시 차원의 통일적 처리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지역 특성에 맞게 업무 처리가 필요한 사무, 사후처리의 효과가 구나 군에 한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무, 전문지식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 집행적인 성격의 사무들이다. 이양의 기대효과로는 주민편의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행정처리 시간 단축, 서비스의 다양화 등이 제시되었다.

공무원들로부터 이양의 필요성이 제기된 사무들의 타당성<sup>2)</sup>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 조사를 실시하였다. 지방자치법의 현행 기준 및 자치분권위원회의 보완 기준을 바탕으로 현지성, 대응성, 다양성, 한정성(구·군), 단순집행을 기초사무 판별기준으로 조정 및 평가, 효율성, 전문성, 한정성(시·도), 업무량 편중을 광역사무 판별기준으로 설정하였다.

<sup>2)</sup> 연구에서 사무이양의 타당성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가 이양 사무들을 얼마나 실제로 가깝게 발굴하고 있는가 하는 정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 기초사무 판별 기준

<b>현지성</b>	• 현지성이 강하여 구나 군이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사무
<b>대응성</b>	• 주민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사무
<b>다양성</b>	• 광역시 차원의 통일적 처리를 요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지역특성에 맞게 업무 처리가 필요한 사무
<b>한정성</b>	• 사무처리의 효과가 구나 군에 한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무
<b>단순 집행</b>	• 전문지식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집행적인 성격의 사무

〈그림 2〉 광역사무 판별 기준

<b>조정 및 평가</b>	• 시·도 관할의 시·군·구간 조정, 평가 등에 관한 사무
<b>효율성</b>	•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광역적 규모 하에서 처리하는 것에 적절한 사무
<b>전문성</b>	• 시, 군, 구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
<b>한정성</b>	• 사무처리의 효과가 시, 도에 한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무
<b>업무량 편중</b>	• 행정수요 특성에 의해 시·군·구별 업무량이 편중된 사무

## 2. 조사 개요

### 1) 설문 및 면접 조사

설문지와 면접을 활용한 의견 조사가 다음 과정을 걸쳐 이루어졌다. 먼저 조사지를 사용한 의견 조사를 본청과 군·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020년 3월 16일부터 2020년 3월 25일까지 10일간 실시하였다. 인천광역시에서 군·구로 이양 필요성이 있는 사무에 대하여 시 본청과 군·구로 나누어 1차 조사하였으며, 기능별 분류체계 단위과제를 참조하여 단위사무명을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단위과제가 업무 성격 등의 사유로 단위사무명 기재가 곤란한 경우에는 담당자가 사무명을 구체화하여 적시하도록 하였다. 실·국별 단위과제 지정이 잘못 분류된 경우에는 실·국에서 부서를 재 지정하였다. 군·구에 대하여는 기초에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사무들을 조사하고 기능별 분류체계의 단위과제를 참고하여 소관부서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다. 신속한 조사를 위해 광역시 해당부서와 협의 후 정책분야, 소관부서, 근거법령, 광역시/군·구 중복 여부, 이양 여부, 이양이 필요한 이유, 이양시 기대효과 및 문제점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이후 면접 조사가 2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1차 면접 조사는 인천광역시 본청 이양사무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020년 4월 22일 실시하였으며 2차 면접 조사는 자치구·군 이양사무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020년 5월 15일 실시하였다<sup>3)</sup>. 면접

조사에서는 설문지를 통해 조사된 이양요구 사무들의 필요성, 인력 및 재정 조건, 문제점 등을 재정리하였다.

## 2) 전문가 의견 조사

인천광역시 담당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및 면접 조사 이후,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이양여부를 검토하였다. 인천광역시에서 군·자치구로의 사무이양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를 위해서 10년 이상 지방자치 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하며 실무 전문가로 참여한 행정학과 교수 및 연구원 박사 등을 중심으로 선별하여 인천광역시 및 관내 군·자치구 공무원들의 지방이양 의견조사서 및 판별기준 등을 제시하고 검토 결과를 종합하였다.

전문가 의견조사는 자치분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이양 심의를 거쳐 경험적으로 보완하여 확정한 사무배분 1차 판별기준(기초사무)과 2차 판별기준(광역사무)을 사용하여 지방이양 타당성의 정도를 표시하도록 하였다(타당성이 낮은 1점부터 타당성이 높은 5점까지). 1차 판별기준(기초사무)은 현지성, 대응성, 한정성, 단순 집행으로 구성되며, 2차 판별기준(광역사무)은 조정 및 평가, 효율성, 전문성, 한정성, 업무량 편중 등으로 구성되었다.

# IV. 분석결과 논의

## 1. 설문 및 면접 조사 결과

조사 결과, 인천광역시 본청에서 요구한 이양 필요 사무는 총 45개이다. 건강체육국 소관 9개 사무, 교통국 소관 2개 사무, 도시재생건설국 소관 1개 사무, 복지국 소관 2개 사무, 시민안전본부 소관 1개 사무,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1개 사무, 해양항공국 소관 1개 사무, 환경국 소관 28개 사무이다.

소관 국별로 이양사무들을 살펴보면 인천광역시 건강체육국에서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권한 등 9개 단위 사무(근거법령: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3) 인천광역시 본청 사무의 이양을 요구한 본청의 보건의료정책과, 교통정책과, 택시화물과, 재생정책과, 노인정책과, 사회재난과, 환경정책과, 대기보전과, 소상공인정책과, 수산과 담당 공무원들과 남동구, 동구, 계양구,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중구, 서구, 옹진군, 강화군 담당 공무원들을 면담하였다.

법률)가 이양할 사무로 요청되었다. 9개 단위 사무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권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 권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사업실적보고 권한, 시도지사의 복지부장관에 대한 사업실적통보 의무, 시정명령권한, 등록취소권한, 과징금부과권한, 포상금지급권한, 과태료 부과 징수 권한 등이다. 이들 사무들은 지방이양일괄법 제정('20.01.09.)에 따른 보건복지부 소관 시·도 이양사무에 대해 군·구 재이양을 요구한 것이다. 이양의 기대효과로 주민편의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행정 처리 시간 단축, 서비스의 다양화 등이 제시되었다.

교통국 교통정책과에서는 교통안전관리자 관리 사무(근거법령: 교통안전법 제54조)가 이양이 필요한 사무로 요청되었다. 이양의 기대효과로 행정처리 시간 단축이 제시되었다. 교통국 택시화물과에서는 택시 유가보조금의 지급 및 관리 사무(근거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 2)가 이양이 필요한 사무로 요청되었다. 이양이 필요한 이유로 전문지식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 집행적인 성격의 사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양의 기대효과로 주민편의 증진과 행정처리 시간 단축효과가 제시되었다.

도시재생건설국 재생정책과에서는 비영리법인설립 허가 및 감독 사무(근거법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 제3항)가 요청되었다. 이양이 필요한 이유로 현지성이 강하여 군이나 구가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며, 시 차원의 통일적 처리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지역특성에 맞게 업무 처리가 필요하고, 사후처리의 효과가 군이나 구에서 한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무(단, 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군·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 우만 해당)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양시 주민편의가 증진되고 행정처리 시간이 단축될 것이라는 이유가 제시되었다.

복지국 노인정책과에서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설치신고 및 관리, 요양보호사자격증교부 및 자격관리 등 2개 단위사무(근거법령: 노인복지법 제39조의 2, 노인복지법 제39조의 3,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3,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4)가 이양이 필요한 사무로 요청되었다. 이양이 필요한 이유는 현지성이 강하여 군이나 구가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었다. 이 양의 기대효과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설치신고 및 관리에서 주민편의 및 행정 처리 시간을 단축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부 및 자격관리 부분에서 실효성 있는 관리 및 양질의 요양보호사 인력양성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가 제시되었다.

시민안전본부 사회재난과에서는 승강기안전관리실태지도점검 단위사무(근거법령: 승강기안전관리법 제1조)가 이양이 필요한 사무로 요청되었다. 이양이 필요한 이유는 현지성이 강하여 군이나 구가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양 기대 효과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서비스 다양화, 문제점으로는 전문성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일자리경제본부 소상공인정책과에서는 소상공인지원센터운영관리 단위사무(근거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이양이 필요한 사무로 요청되었다. 이양이 필요한

이유는 현지성이 강하여 군이나 구가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양 기대 효과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비스 다양화, 문제점으로는 전문성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해양항공국 수산과에서는 어항시설관리 단위사무(근거법령: 어촌·어항법 제35조, 제56조)가 이양이 필요한 사무로 요청되었다. 이양이 필요한 이유는 현지성이 강하여 군이나 구가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주민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사무이며 시 차원의 통일적 처리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지역특성에 맞게 업무 처리가 필요한 사무이며 사후 처리의 효과가 군이나 구에 한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양 기대 효과로 주민 편의 증진, 행정처리 시간 단축과 서비스의 다양화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환경국 환경정책과에서는 다중 이용시설 실내공기질관리 지도점검 계획 수립 단위 사무(근거법령: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3조)가 이양이 필요한 사무로 요청되었다. 이양이 필요한 이유는 현지성이 강하여 군이나 구가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행정처리 시간 단축이라는 이양 기대효과가 있지만, 지도나 감독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났다. 환경국 대기보전과는 대기기본 및 초과배출 부과금 부과징수 등 15개의 대기관련 사무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과징금부과징수 등 수질관련 12개의 사무(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104조, 물환경보전법 제74조)가 이양이 필요한 사무로 요청되었다. 군·구로 이양이 필요한 이유는 모든 사무 관련 사항에서 현지성이 강하여 군이나 구가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주민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이유를 제시하였다. 이양 시 기대효과로는 주민 편의가 증진되고, 행정 처리 시간이 단축되지만 재정지원이 필요할 수 있고 지도·감독이 증가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되었다. 기타 의견으로 대기 기본 및 초과배출 부과금 부과징수 외 10개의 사항에서 군·구의 입장은 전문적인 인력 충원과 재정지원이 확보(선행)되어야 광역사무의 위임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과 일부 산업단지는 2~3개의 군·구가 포함되어 사무 처리 방법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2.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 1)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 권한 외 사무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 권한 외 사무의 전문가 의견조사 1차 판별기준에 따른 기초사무 판별 점수는 3.03점이며 2차 판별기준에 따른 광역사무 판별 점수는 2.95점이다. 기초사무 이양을 제시하는 의견이 광역사무로 존치하는 의견보다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 권한 외 사무들의 전문가 판별점수

전문가	현지성	대응성	다양성	한정성	단순집행	기초 사무 판별점수
	조정 및 평가	효율성	전문성	한정성	업무량 편중	광역사무 판별점수
전문가1	5	5	3	1	5	3.80
	3	5	3	2	1	2.80
전문가2	5	4	1	2	3	3.00
	3	2	4	5	1	3.00
전문가3	5	5	4	3	3	3.80
	3	2	3	2	3	2.60
전문가4	5	4	3	2	1	3.00
	3	3	3	3	3	3.00
전문가5	4	4	2	4	4	3.60
	1	2	1	1	1	1.20
전문가6	1	1	2	1	1	1.20
	5	3	4	5	5	4.40
전문가7	5	4	2	3	1	3.00
	5	4	3	2	1	3.00
전문가8	4	4	2	2	2	2.80
	2	4	5	4	3	3.60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 권한 등 9개 사무는 군·구에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에 따른 이양사무이며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현지성과 대응성이 높고 사무의 파급효과가 군·구에 한정된 단순 집행 사무이므로 군·구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관련법령의 시·도지사 관리사항 중 군·구에 업무를 이양하고 광역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다만, 시·군·구 보건소에 외국인 환자를 포함해 보건 인력 전반에 관해 등록에서 행정처분까지 담당할 수 있는 전담팀이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인력보강 뿐만 아니라 행·재정적인 측면에서도 보완을 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건소 기능 및 업무 조정을 통해 외국인 환자유치 관련 업무 대응 역량 확보가 필요하다.

전문가 소수의견으로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기초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기초로 이양하는 것은 외국인 환자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의료 전문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기초 단위에는 전문 의료기관보다는 보건소 중심의 기초 시설에 국한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에 따른 2차적 인

프라 및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인가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특히, 전문 인력 유치와 이에 필요한 역량, 제반 예산 및 비용이 기초 단위에서 수용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초보다는 광역단위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다.

## 2) 교통안전 관리자 관리 사무

교통안전 관리자 관리 사무의 전문가 의견조사 1차 판별기준에 따른 기초사무 판별 점수는 3.5점이며 2차 판별기준에 따른 광역사무 판별 점수는 2.73점이다. 기초사무 이양을 제시하는 의견이 광역사무로 존치하는 의견보다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 교통안전 관리자 관리 사무들의 전문가 판별점수

전문가	현지성	대응성	다양성	한정성	단순집행	기초 사무 판별점수
	조정 및 평가	효율성	전문성	한정성	업무량 편중	광역사무 판별점수
전문가1	4	4	3	1	5	3.40
	1	4	2	1	1	1.80
전문가2	4	3	1	5	2	3.00
	5	4	3	1	2	3.00
전문가3	5	5	4	4	5	4.60
	2	2	2	3	2	2.20
전문가4	3	3	3	3	3	3.00
	3	5	4	2	1	3.00
전문가5	4	4	1	4	4	3.40
	2	1	1	1	1	1.20
전문가6	5	5	5	1	5	4.20
	5	5	5	1	1	3.40
전문가7	4	5	3	2	1	3.00
	4	5	3	2	1	3.00
전문가8	4	3	3	4	3	3.40
	4	4	4	5	4	4.20

교통안전 관리자 관리(자격취소 및 해당 자격 정지) 사무는 지역 주민과 밀접한 것으로 판단되어 지역밀착형 현장관리 업무로 기초로 이양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취소나 정지는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수행하는

단순 사무에 해당한다. 교통 정책과 같은 큰 범주의 사무가 아니므로 기초 단위로 이양하여도 행정 처리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양조건에 대하여 군·구의 요청사항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현지성과 대응성이 높고 사무의 파급 효과가 군·구에 한정되고, 단순 집행 사무이므로 기초단위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현장성이 중요한 업무로 관련 사무들이 상위 기관으로 이관이 되어 처리되는 행정비용과 시간을 고려하였을 때 기초 단위에서 처리하는 것이 신속 행정을 통하여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필요한 기초 단위의 인력 보강과 상위법에서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매뉴얼 작성과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소수의견으로 도시 발전을 위해 광역시에서 하는 것이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아직 기초단위에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매뉴얼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광역단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 3) 택시 유가보조금 지급 및 관리

택시 유가보조금 지급 및 관리(보조금 지급 정지)의 전문가 의견조사 1차 판별기준에 따른 기초사무 판별 점수는 3.18점이며 2차 판별기준에 따른 광역사무 판별 점수는 2.6점이다. 기초사무 이양을 제시하는 의견이 광역사무로 존치하는 의견보다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 택시 유가보조금 지급 및 관리(보조금 지급 정지) 사무들의 전문가 판별점수

전문가	현지성	대응성	다양성	한정성	단순집행	기초 사무 판별점수
	조정 및 평가	효율성	전문성	한정성	업무량 편중	광역사무 판별점수
전문가1	3	3	2	1	4	2.60
	1	3	2	1	2	1.80
전문가2	4	3	1	5	2	3.00
	5	4	3	1	2	3.00
전문가3	5	5	3	3	5	4.20
	2	2	2	2	2	2.00
전문가4	4	3	2	1	5	3.00
	3	3	3	3	3	3.00
전문가5	4	4	1	2	4	3.00
	2	2	1	1	1	1.40
전문가6	5	5	5	1	1	3.40

전문가	현지성	대응성	다양성	한정성	단순집행	기초 사무 판별점수
	조정 및 평가	효율성	전문성	한정성	업무량 편중	광역사무 판별점수
	5	5	3	1	1	3.00
전문가7	3	2	1	4	5	3.00
	3	4	1	5	2	3.00
전문가8	5	2	3	3	3	3.20
	2	4	3	4	3	3.20

택시 유가보조금 지급 및 관리(보조금 지급 정지) 사무는 현지성과 대응성이 높은 단순집행 사무로서 기초사무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 첫째, 전산 상 통합관리에 어려움이 없으므로 기초 단위로 이양하는 것이 적정하다. 새로이 조사되거나 DB를 구축해야 하는 업무가 아닌 전산상의 이관 업무로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초단위로 이양하여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둘째, 화물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는 구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택시 유가보조금 지급 및 관리사무도 기초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이양시 조직 인력 및 관련 업무 수행에 따른 재정 부담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일정기간 시스템 이양 등 업무이양 및 전환과정에서 광역과 기초의 업무 협조가 필요할 것이다. 기초단위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보충이 수반되어야 한다.

#### 4)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설치 신고 및 관리 외 사무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설치 신고 및 관리 외 사무의 전문가 의견조사 1차 판별기준에 따른 기초사무 판별 점수는 2.75점이며 2차 판별기준에 따른 광역사무 판별 점수는 3.25점이다. 광역사무 존치 의견이 기초사무 이양 제시 의견보다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7〉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설치 신고 및 관리 외 사무들의 전문가 판별점수

전문가	현지성	대응성	다양성	한정성	단순집행	기초 사무 판별점수
	조정 및 평가	효율성	전문성	한정성	업무량 편중	광역사무 판별점수
전문가1	2	2	2	1	1	1.60
	3	4	4	3	4	3.60
전문가2	4	5	2	1	3	3.00
	2	3	4	5	1	3.00

전문가	현지성	대응성	다양성	한정성	단순집행	기초 사무 판별점수
	조정 및 평가	효율성	전문성	한정성	업무량 편중	광역사무 판별점수
전문가3	5	5	3	3	3	3.80
	2	2	3	2	2	2.20
전문가4	5	4	2	1	3	3.00
	3	3	3	3	3	3.00
전문가5	2	2	1	2	2	1.80
	5	4	4	4	4	4.20
전문가6	1	1	2	5	5	2.80
	5	1	3	5	5	3.80
전문가7	4	5	3	2	1	3.00
	4	5	3	2	1	3.00
전문가8	2	3	4	3	3	3.00
	4	3	3	3	3	3.20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및 관리 사무는 이양에 찬성하는 전문가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이 둘로 나뉘었다. 찬성하는 의견은 요양보호사 시설기관에 대한 현장 방문, 관리 용이성을 등을 감안했을 때 기초로 이양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현지성 및 대응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다만, 이양하는 경우 행·재정 지원 및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반대하는 의견은 요양보호사 양성기관 지정은 군·구에 따라 차별이 있을 것이며 도시화가 된 지역과 아닌 지역 등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기관 지정에 부적합하거나 합리미달의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인접 구·군과 격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지정과정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업무의 경우 광역 단위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난할 것으로 보이나 향후 기초 단위의 상황이 달라질 경우 배분해야 할 것으로 점진적 이양사무로 판단하였다.

### 5) 승강기안전관리실태 지도점검 사무

승강기안전관리실태 지도점검의 전문가 의견조사 1차 판별기준에 따른 기초사무 판별 점수는 3.55점이며 2차 판별기준에 따른 광역사무 판별 점수는 2.73점이다. 기초사무 이양을 제시하는 의견이 광역사무로 존치하는 의견보다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8〉 승강기안전관리실태 지도점검 사무들의 전문가 판별점수

전문가	현지성	대응성	다양성	한정성	단순집행	기초 사무 판별점수
	조정 및 평가	효율성	전문성	한정성	업무량 편중	광역사무 판별점수
전문가1	4	5	3	4	4	4.00
	3	2	2	3	2	2.40
전문가2	5	4	1	3	2	3.00
	5	3	4	1	2	3.00
전문가3	5	5	3	3	3	3.80
	2	2	3	2	2	2.20
전문가4	3	3	3	3	3	3.00
	3	4	5	2	1	3.00
전문가5	5	5	1	5	5	4.20
	1	1	1	1	1	1.00
전문가6	5	5	3	1	4	3.60
	5	3	5	5	3	4.20
전문가7	4	5	3	2	1	3.00
	5	4	2	3	1	3.00
전문가8	5	5	1	4	4	3.80
	2	4	4	2	3	3.00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 지도점검 사무는 시·군·구 이양사무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이 둘로 나뉘었다. 찬성의견은 현지성 및 대응성이 높고 파급효과가 기초에 한정되어 있고 단순 집행 사무이기 때문에 기초단위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반대의견은 승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 등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해야 하며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초 단위로 이양하기보다는 광역 단위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승강기는 국민생활의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편의를 제공하기 때문에 철저한 관

리가 필요한 사무이다. 이에 따라, 승강기와 관련된 업무를 기초 단위에서 현지성과 대응성을 강조하는 빠른 처리가 필요하다. 안전업무에 대한 현장대응역량 측면에서 이양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 6) 어항시설관리 사무

어항시설관리의 전문가 의견조사 1차 판별기준에 따른 기초사무 판별 점수는 3.10점이며 2차 판별기준에 따른 광역사무 판별 점수는 3.43점이다. 광역사무 존치 의견이 기초사무 이양 제시 의견보다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9〉 어항시설관리 사무들의 전문가 판별점수

전문가	현지성	대응성	다양성	한정성	단순집행	기초 사무 판별점수
	조정 및 평가	효율성	전문성	한정성	업무량 편중	광역사무 판별점수
전문가1	4	4	3	4	3	3.60
	3	3	4	4	3	3.40
전문가2	5	4	1	2	3	3.00
	3	4	2	5	1	3.00
전문가3	4	4	4	3	2	3.40
	3	4	4	3	2	3.20
전문가4	5	4	3	2	1	3.00
	3	3	3	3	3	3.00
전문가5	2	2	1	2	2	1.80
	2	4	4	4	4	3.60
전문가6	5	5	1	5	1	3.40
	5	2	4	5	5	4.20
전문가7	5	4	3	2	1	3.00
	4	5	3	2	1	3.00
전문가8	5	4	3	3	3	3.60
	4	3	5	4	4	4.00

어항시설관리 사무는 기초 단위 이양에 반대하는 의견이 찬성하는 의견보다 많았다. 찬성 의견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어항시설관리는 국가 어항을 제외하고는 현지성 및 대응성의 관점에서 기초 정부가 사실상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가어항 등 개발계획수립 및 사업유지

등은 국가에서 하고 있으며, 어촌정주어항이나 마을공동어항등 지방어항의 경우는 광역 단위보다는 실제적으로 가까이에 있는 기초 단위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법·제도정비 및 행·재정 지원 등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반대의견으로는 다음과 같은 논리가 제시되었다. 첫째, 해당 사무는 전문성을 요구하며 업무량이 편중되어 있고, 파급효과가 군·구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는 광역시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일부에 해당하는 어항시설 관리업무는 기초가 아닌 광역 수준에서 해수 및 해양을 염두에 둔 업무 처리가 필요하다. 둘째, 어항개발사업의 경우는 시설 관리와는 다른 대규모 사업이며 여러 가지 정책 요소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광역 내지 국가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어항의 개발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시설 유지관리를 이양하는 경우 실질적 예산 등 비용 부문에 대한 사전 협의가 우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비용에 대한 사전 협의 없는 이양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 7)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지도점검 계획 수립 사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지도점검 계획 수립의 전문가 의견조사 1차 판별기준에 따른 기초사무 판별 점수는 3.33점이며 2차 판별기준에 따른 광역사무 판별 점수는 2.73점이다. 기초사무 이양을 제시하는 의견이 광역사무 존치를 제시하는 의견보다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0〉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 지도점검 계획 수립 사무들의 전문가 판별점수

전문가	현지성	대응성	다양성	한정성	단순집행	기초 사무 판별점수
	조정 및 평가	효율성	전문성	한정성	업무량 편중	광역사무 판별점수
전문가1	3	3	3	2	2	2.60
	3	4	4	3	3	3.40
전문가2	5	4	3	2	1	3.00
	2	3	4	5	1	3.00
전문가3	5	5	4	3	4	4.20
	1	2	2	3	2	2.00
전문가4	5	4	3	2	1	3.00
	3	3	3	3	3	3.00
전문가5	4	4	2	4	4	3.60

전문가	현지성	대응성	다양성	한정성	단순집행	기초 사무 판별점수
	조정 및 평가	효율성	전문성	한정성	업무량 편중	광역사무 판별점수
	1	1	1	1	1	1.00
전문가6	5	5	4	1	4	3.80
	5	2	4	1	3	3.00
전문가7	2	5	3	4	1	3.00
	4	5	2	3	1	3.00
전문가8	3	4	3	4	3	3.40
	3	4	4	3	3	3.40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지도점검 계획 수립 사무의 시·군·구 이양에 대해서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으로 나뉘었다. 찬성의견으로는 다음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첫째, 주민 건강권과 관련된 지도 관리 중심의 현장 대응 업무로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기초자치단체로의 이양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현지성과 대응성이 높고, 파급효과가 국지적이며, 단순집행 사무이므로 기초 단위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다만, 기초단위로 이양 시 인력증원 뿐만 아니라 행·재정 지원 및 법 개정(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3 제3항,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반대 의견은 주로 전문성이나 효율성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논리가 제시되었다. 첫째, 환경관련 문제는 민원이나 피해가 발생시 광역적으로 확산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초 정부보다는 광역 정부가 수행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나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다. 둘째, 건강권의 관점에서 기초와 광역 간 중복해서 지도 점검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기초단위의 경우 규모가 큰 사업장을 관리(인·허가, 지도 점검 등)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없고, 조직 내 전문 직렬(환경직)의 상위 직급자(팀장급 이상) 부재로 전문적인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해당 사무는 도시권과 비도시권의 특성을 달리하고, 지역 주민의 이동성 등을 고려할 때 광역 단위에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반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업무 수행과 관련된 민원이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현지성과 대응성 차원에서 광역단위 지방 정부와 기초단위 지방정부 간 협력해야 할 사무이다.

## 8) 대기기본 및 초과배출 부과금 부과 징수 외 사무

대기기본 및 초과 배출 부과금 부과 징수 외 사무의 전문가 의견조사 1차 판별기준에 따른

기초사무 판별 점수는 2.95점이며 2차 판별기준에 따른 광역사무 판별 점수는 3.15점이다. 광역사무 존치의견이 기초사무 이양의견보다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1〉 대기기본 및 초과 배출 부과금 부과 징수 외 사무들의 전문가 판별점수

전문가	현지성	대응성	다양성	한정성	단순집행	기초 사무 판별점수
	조정 및 평가	효율성	전문성	한정성	업무량 편중	광역사무 판별점수
전문가1	4	4	4	1	1	2.80
	3	4	4	3	3	3.40
전문가2	5	4	3	2	1	3.00
	2	3	4	5	1	3.00
전문가3	5	5	5	4	3	4.40
	2	2	4	2	2	2.40
전문가4	5	4	2	3	1	3.00
	3	3	3	3	3	3.00
전문가5	2	2	1	1	1	1.40
	3	4	4	4	4	3.80
전문가6	5	5	1	1	1	2.60
	5	3	5	1	3	3.40
전문가7	3	3	3	3	3	3.00
	3	3	3	3	3	3.00
전문가8	4	5	3	3	2	3.40
	4	4	3	3	2	3.20

대기기본 및 초과 배출 부과금 부과 징수 사무 이양에 대해서는 찬성의견보다 반대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의견으로는 다음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첫째, 주민 건강권과 관련된 지도 단속 업무로 이양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둘째, 전문성 이슈와 관련하여 업무 이양에 따른 추가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며 이양 거부 사유로는 부적정하다. 다만, 기초 이양시 인력 증원, 행·재정지원 뿐만 아니라 조례 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반대의견으로는 다음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첫째, 대기관련 업무 또한 그 업무 범위가 광역 수준이며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기초에서 민원 발생 접수 후 광역에 보고하는 절차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둘째, 군·구간 업무량 편중이 심하고, 파급효과가 군·구를 넘어서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도 광역시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

본은 도도부현과 지정시에서 담당하고, 미국은 광역연합형 특별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다. 뒷째, 대기 및 환경 관련 사무에 대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현지성 및 대응성을 고려하였을 때 기초 단위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으나, 환경관련 문제는 특정 한 곳에 국한되지 않고 확대 및 확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광역단위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 9)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부과 징수 외 사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부과 징수 외 사무의 전문가 의견조사 1차 판별기준에 따른 기초사무 판별 점수는 3.15점이며 2차 판별기준에 따른 광역사무 판별 점수는 3.15점이다.

〈표 1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부과 징수 외  
사무들의 전문가 판별점수

전문가	현지성	대응성	다양성	한정성	단순집행	기초 사무 판별점수
	조정 및 평가	효율성	전문성	한정성	업무량 편중	광역사무 판별점수
전문가1	4	4	4	3	3	3.60
	2	2	3	2	3	2.40
전문가2	5	4	3	2	1	3.00
	2	3	4	5	1	3.00
전문가3	5	5	5	4	5	4.80
	2	2	2	3	2	2.20
전문가4	5	4	3	2	1	3.00
	3	3	3	3	3	3.00
전문가5	2	2	1	1	1	1.40
	3	4	4	4	4	3.80
전문가6	5	3	1	3	3	3.00
	5	4	5	3	5	4.40
전문가7	5	4	3	2	1	3.00
	4	5	3	2	1	3.00
전문가8	4	4	3	3	3	3.40
	3	4	3	4	3	3.4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부과 징수 사무는 이양 찬성의견과 이양 반대의견이 엇비슷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양 찬성의견으로는 다음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첫째, 산업 단지 내 환경관리 사무가 대기, 수질은 광역으로 악취, 비산먼지는 기초로 이원화되어 있어 민원관리에 불편하며 민원인의 입장에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오염물질(대기오염 물질, 폐수)이 하나의 제조 시설에서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대기와 폐수로 따로 분리되어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바, 이러한 오염물질 관리업무는 기초 정부로 이양하여 한 번에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이에 대한 업무 비용 및 조직관리 권한도 함께 이양해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장대응이 강조되는 업무로 이양 필요성이 인정된다. 광역 차원의 통일적 처리를 위한 기준 및 지침의 필요성은 인정이 되며 이와 관련된 자치 업무 기능의 전문 역량은 이양 이후 지속적으로 보완·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소극행정유발 옴브즈만 개선과제로 선정하여 기초 단위로 이양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현지성 및 대응성 관점에서 기초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대의견으로는 다음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첫째, 수질관련 업무는 기초 지자체에서 민원발생 접수 후 광역 지자체에 보고함에 따라 실질적 업무는 광역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군·구간 업무량 편중이 심하고, 파급효과가 군·구를 넘어서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도 광역시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수질관리와 관련하여 기초 단위에서 상·하수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산업 단지를 비롯한 수질오염과 관련한 문제는 기초 단위가 아닌 광역 또는 전국 단위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수질관련 사무의 신고, 인·허가권 등의 업무가 기초 단위로 이양이 되면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 이것은 지자체간 새로운 갈등 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광역단위의 통합적 관리가 더 효과적이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이양의 타당성이 확보된 사무들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권한 외 사무, 교통안전 관리자 관리 사무, 택시 유가 보조금 지급 및 관리 사무, 승강기안전관리실태 지도 점검 사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지도점검 계획 수립 사무 등이다.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 권한 외 사무는 기초사무 판별점수와 광역사무 판별점수의 차이가 크지 않고 표준편차가 0.78, 0.85로 전문가 별 의견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양 반대의견들을 비중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각 사무들의 전문가 의견조사 판별기준 점수 평균과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다.

〈표 13〉 기초사무 및 광역사무 판별 점수 평균 및 표준편차

사무명	기초사무 판별점수		광역사무 판별점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 권한 외 사무	3.03	0.78	2.95	0.85
교통안전 관리자 관리 사무	3.5	0.56	2.73	0.89
택시 유가보조금 지급 및 관리 사무	3.18	0.44	2.55	0.65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설치 신고 및 관리 외 사무	2.75	0.67	3.25	0.57
승강기 안전 관리 실태 지도점검 사무	3.55	0.46	2.73	0.85
어항시설관리 사무	3.1	0.55	3.43	0.44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지도점검 계획 수립 사무	3.33	0.49	2.73	0.77
대기기본 및 초과 배출 부과금 부과 징수 외 사무	2.95	0.78	3.15	0.3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부과 징수 외 사무	3.15	0.88	3.15	0.67

## V. 이양사무 발굴을 위한 정책 시사점

이양사무 발굴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 설문 및 면접 조사를 통해 이양이 요청된 사무들 중 기초사무 판별 점수가 광역사무 판별점수보다 높아 이양의 타당성이 확보된 사무들은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 권한 외 사무, 교통안전 관리자 관리 사무, 택시 유가 보조금 지급 및 관리 사무, 승강기안전관리실태 지도 점검 사무,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 지도점검 계획 수립 사무 등이다. 이들 사무들은 현지성과 대응성이 높고 주민의 편의성 측면에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이양의 타당성이 확보된 사무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담당 인력의 증가 및 역량 개발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업무량이 합리적 수준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공무원 설문 및 면접 조사를 통해 이양이 요청된 사무들 중 광역사무 판별 점수가 기초사무 판별점수보다 높아 이양의 타당성이 부족한 사무들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및 관리 외 사무, 어항 시설 관리 사무, 대기기본 및 초과 배출 부과금 부과 징수 외 사무, 수

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부과 징수 외 사무 등이다.

이양의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별된 이유들은 군·구 간 업무량 편중이 심하거나 도시화에 따라 군·구 간 서비스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사무들로 광역단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및 관리 외 사무), 사무의 수행이 전문성을 요구하며, 업무량이 편중되어 있거나 파급효과가 군·구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는 광역시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어항시설 관리 사무, 대기기본 및 초과 배출 부과금 부과 징수 외 사무), 업무 범위가 광역 수준이며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기초에서 민원 발생 접수 후 광역에 보고하는 절차로 업무 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경우(대기기본 및 초과 배출 부과금 부과 징수 외 사무), 관련 문제가 특정 한 곳에 국한되지 않고 확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광역단위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기초 단위로 이양이 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 지자체간 새로운 갈등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광역단위 통합적 관리가 더 효과적인 경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부과 징수 외 사무) 등이다.

셋째, 사무이양의 타당성이 확보된 경우에도 이양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력뿐만 아니라 재정지원의 제도화가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 대부분이 공감하는 사항으로 행·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주로 단순 업무만 이양되거나 이양된 사무들도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사무이양의 실효성은 저하된다. 인천광역시가 2016년 여객자동차 관련사무와 택시 유가보조금 지급 및 관리 등 사무를 위임 및 이양하였을 때에도 인력 및 재정 지원이 뒤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군·구에서의 업무적 부담이 여전히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어항시설관리 등의 사무이양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이양된 사무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해당 사무의 유지 및 보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은 반드시 광역시에서 제공하는 것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사무 이양에 있어서 인력 및 재원 수급에 대한 해결책 마련은 광역시의회의 합의와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다. 결과적으로 광역시의회의 공식적 의사결정을 통한 절차적 제도화가 이양의 유효한 결과물을 도출해 낼 수 있다.

넷째, 이양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무의 특성을 고려한 점진적 접근이 필요하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및 관리 사무는 기초로 이양할 경우 함량 미달의 부적합한 교육기관이 지정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기초자치단체 여건의 성숙도에 따라 이양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어항관리에 대한 업무는 국가어항 개발계획 수립과 맞물려 있는 만큼 광역 및 기초 단위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무의 성격이 아니므로 충분한 시차를 두고 사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률 및 제도를 개선시키고 난 이후 이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어항관리에 대한 전문 인력확보와 현장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지역 어촌계 및 주민들과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광역과 기초 간 협력이 요구되는 사무도 있는데 다중이용

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지도점검 계획 수립 사무가 대표적이다. 지역 주민의 이동성, 도시화 여건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사무는 광역단위에서 업무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민원이 현장에서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광역단위 지방정부와 기초단위 지방정부가 계속적으로 협력해야 할 사무이다.

향후 광역시-군·구 간 합리적 사무배분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다음 사항들을 제안한다. 첫째, 광역시-군·구 담당자 간 상호 협의를 원활하게 하고 이양 관련 매뉴얼, 절차 및 법령 개정 사항까지도 소통할 수 있는 협력 채널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다. 특히, 광역시와 군·구 상호간 직·간접적으로 연계가 되는 사무들(예: 교통안전 관리자 관리)에 대해서는 사무 수행의 효과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인천광역시 업무 추진방향 및 세부지침 등이 군·구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군·구의 기술적, 재정적 역량 문제 및 업무 자체에 대한 부담을 고려한 광역시-군·구 간 인력 및 기술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광역시 차원에서 군과 자치구의 인력 양성 등을 위한 전반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마련되거나 사무이양 및 협력사무 수행에 따른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정보교환 및 기술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인천광역시와 군·구 행정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무이양의 원칙들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현지성 및 보충성 원칙 등 사무배분 원칙들을 재정립하여 광역시로부터 기초자치단체로의 위임사무들을 최소화하거나 궁극적으로 폐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양사무에 따른 재정지원과 기술지원 및 인력보강도 원칙적으로 제도화하여 행정의 대응성과 주민들의 행정 편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사무이양 관련 자치법규 사전심사 및 평가제도 운영이 필요하다. 인천광역시가 본청 사무들의 위임 및 이양을 고려하거나 기초자치단체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할 때 인천광역시의회 차원에서 자치법규와 관련한 사무이양 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사무이양 후에는 성과 등을 평가하여 광역시와 군·구 간 협력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무와 재원이 함께 이양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므로, 조례 제정 및 입법 평가 시에 재정 보전 방안들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고경훈. (2014). 「중앙행정 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소요비용 산정모델 개발과 적용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금창호. (2018).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과 기초 및 광역의 기능배분」. 한국도시행정학회·한국행정학회 지방행정연구회 기획세미나 발표논문집.
- 김병국. (2003). 「지방분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도 기능 재조정 방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성주·홍근석. (2018). 「지역자원 동원 최적화 분권 모델 개발: 부산시와 구군 및 특별행정기관간 사무조정을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연구 2019-22.
- 김영수. (1995). 중앙과 지방정부간 사무배분에 관한 비판적 분석·평가. 「지방자치연구」, 13(2): 151-184.
- 김필두·한부영. (2017). 「고령사회 대비 중앙-지방 간 노인복지기능 분담 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 보고서 2017-01.
- 박종관. (1996). 중앙과 지방간 기능 배분에 관한 연구: 노동정책 및 행정기능 배분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7: 103-122.
- 박재희. (2019). 중앙-지방 간 사무배분의 실태분석: 식품안전 기능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1(3): 37-63.
- 박혜자·오재일. (2003). 문화행정에 있어 분권화와 정부 간 기능배분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논집」, 15(4): 953-975.
- 손진상·김창승. (200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에 관한 연구. 「지역발전연구」, 2(2): 133-159.
- 윤정옥·권재윤·박제인·김지영. (2018).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성과에 관한 평가. Dunn의 정책분석 기준 적용.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527-528.
- 이원일. (1998). 광역·기초자치단체간 갈등에 관한 연구: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2(2): 201-217.
- 자치분권위원회. (2019).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2015). 「기관위임사무 지방이양을 위한 이양기준 검토 및 이양방안 제안」.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 최봉석. (2015). 지방자치 사무배분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사무배분 사전검토제」의 도입 가능성 검토 -. 「지방자치법 연구」, 15(4): 69-95.
- 최봉석 외. (201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구분 및 사무조사 연구」. 행정자치부.
- 최항순. (2010).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기능의 합리적 배분 시·도 및 시·군·구 간 기능배분을 중심

으로. 「GRI 연구논총」, 12(3): 177-204.

하혜영. (2020). 지방이양일괄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이슈와 논점」, 제1651호.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6). 「대형광학망원경개발사업 사전타당성조사 보고서」. 2006-09.

한국지방재정학회. (2017). 「제주특별법 제4단계 중앙권한 이양에 따른 재정수요 분석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8). 「지방자치단체 전수조사를 통한 지방이양일괄법 이양비용산정과 지원방안 연구」. 자치분권위원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9). 「국가사무의 제주사무 배분 연구」. 연구용역 보고서.

한부영. (2019). 자치분권 사전협의제의 사무배분 기준과 원칙. 「자치발전」, 7: 22- 29.

지방자치법. (2020)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2020)

Dunn, W.N. (2018). *Public Policy Analysis: An Integrated Approach*. Sixth Edition. New York: Routledge.

---

**박재희:** Virginia Commonwealth University에서 행정학 박사(미국 주립대학교의 다양성관리 연구, 2015)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제도실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조직관리, 인사관리, 거버넌스 등이다. 최근 논문으로 부신형 자치경찰제 모형에 관한 연구(지방정부연구, 2020), 중앙-지방간 사무배분 실태에 관한 연구: 식품안전 기능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19), 감염병 재난 거버넌스 비교 연구(한국정책학회보, 2018) 등이 있다(E-mail: jpark@krila.re.kr)